

자산보관·관리보고서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신영마라톤증권투자신탁A1호(주식)
 나. 분류 : 증권집합투자기구-주식형
 다. 보관·관리기간 : 2011. 12. 09 ~ 2012. 12. 08
 라. 집합투자업자 : 신영자산운용(주)
 마.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 : 광주은행, 우리투자증권, 동부증권, 삼성생명보험, KDB생명보험외 44개사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· - 해당사항없음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변경일자	변경사유	성명	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	협회등록번호
2012-03-20	말소	이철진		2109001106
2012-10-17	신규	홍성수		2103000230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교체·해임에 관한 사항

(단위 : 원)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		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
삼덕회계법인	12개월	4,070,000원	서면계약	2012-12-08	삼덕회계법인	12개월	3,586,000원	서면계약

7.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확인

- (1)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- 부합함
- (2)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
- 적정함
- (3)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
- 해당사항없음
- (4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
- 공정함
- (5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의 여부
- 적정함
- (6)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- 해당사항없음
- (7)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생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- 해당사항없음
- (8)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- 신영자산운용(주)의 준법감시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투자신탁별 자산배분내역의 적정성과 이행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(주)하나은행 투자신탁부 전화번호 : 02)3788-5102

-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